

# 제주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관련 제도적 방안\*

김현철\*\*·강영은\*\*\*

- I. 들어가며
- II. 애월 LNG 인수기지 현황분석
- III.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
- IV. 주민지원관련 법 검토
- V.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 국문요약

육지부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저비용의 LNG를 사용해 온 반면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LPG를 주요 난방연료로 사용해 왔다. 타지역에 비해 고비용·비환경적인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주 도내의 의견이 있어 왔다. 제주도에서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8년 8월에 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일 수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대한 건립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발표되었고, 현재 인수기지 건설이 애월항에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계획 중인 애월항 인수기지 건립 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안은 향후 인수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이다. 공사(중앙정부)의 지

\* 이 논문은 2016년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학석사

원은 이미 공식화 되어 있어 형평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과 보상의 기준이 같을 수 밖에 없는 바, 인구 및 여러 여건이 대한민국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액은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에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 주민지원 관련 법 검토 및 장에서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한다.

주제어 : LNG 인수기지, LPG, 주민지원조례

## I. 들어가며

한반도 본토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저비용의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 온 반면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LPG(액화석유가스)를 주요 난방연료로 사용해 왔다. 타지역에 비해 고비용·비환경적인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주 도내의 의견이 있어 왔다. 제주도에서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8년 8월에 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일 수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대한 건립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발표되었고, 현재 인수기지 건설이 애월항에 진행중에 있다. 2012년에 항만개발과의 어업피해조사용역에 따른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3년 한국가스 공사의 인수기지 발주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2016년 12월까지 LNG 인수기지 건설을 시공할 예정이나 2016년 현재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 제주 LNG 인수기지 (애월항)



이렇게 진행 계획 중인 애월항 인수기지 건립 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안은 향후 인수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이다. 왜냐하면 현재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전적으로 대한민국 내 LNG 인수기지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변지역의 지원을 공사 내부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미 공식화 되어 있어 형평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과 보상의 기준이 같을 수밖에 없는 바, 인구 및 여러 여건이 대한민국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액은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애월지역은 과거 경마장 입지와 쇼핑아울렛 유치 문제 등으로 상당한 상실감이 있어 왔고, 그 이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숙원사업들을 현실화 하기 위해 애월 읍민들은 LNG 인수기지를 지역 내에 유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에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을 하고 제Ⅲ장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을 한다. 제Ⅳ장에서는 주민지원 관련 법 검토를 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한다.

## II. 애월 LNG 인수기지 현황분석

애월읍은 24개의 법정리, 26개의 행정리, 6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20,215ha로 제주시 총면적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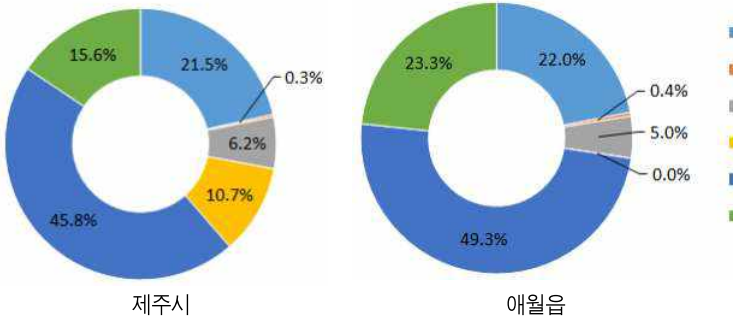
〈표 II-1〉 애월읍 자연마을 현황

리별	자연마을	리별	자연마을	리별	자연마을
애월리	동상동	상가리	본동	상귀리	소앵동
	동하동		서동		광석동
	서상동		원동		신상동
	서하동	하가리	본동	수산리	예원동
곽지리	상동	본동	상동		
	하동	서동	당동		
금성리	상동	신엄리	윤남동		하동
	하동		중엄리	본동	본동
봉성리	구몰동	구엄리	상동	장전리	본동
	신명동		하동		양진동
	중하동		모감동	유수암리	본동
	서상동	상동	사라동		
	동계동	하동	개척단지		
	어음1리	화전동	하귀1리	관전동	고성1리
부면동		고수동		고성2리	양잠단지
계원동		군향동		광령1리	본동
어음2리	동동	안남동			사라동
	서동	남주동		남죽동	
납읍리	동동	하귀2리		미수동	광령2리
	서동		가문동	광령3리	본동
	하동		번대동	계	66개동
고내리	본동		답동		
	서동		학원동		

자료 : 애월읍사무소 홈페이지

애월읍은 남고북저의 지형 형태이며, 북쪽은 바다, 남쪽으로 한라산이 인접해 있고 오름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애월읍 내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농경지가 27.4%,

〈그림 II-2〉 애월읍 토지이용 현황



임야가 49.3%를 차지한다.

애월읍의 인구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29,448명으로 제주시 총 인구 444,967명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15,152명, 여자 인구는 14,296명이다. 특히 애월읍은 유아인구 비율이 낮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구조를 보인다.

애월읍은 크게 동쪽은 제주시 제주, 서쪽은 제주시 한림읍, 남쪽은 서귀포시 서귀포, 북쪽은 바다가 각각 접하고 있다. 지방도 1132호(일주도로) 및 1135호선(평화로), 1136(중산간도로) 등이 관통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주시 및 인근 읍면으로의 교통 여건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또한 애월읍은 애월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제주시청까지 약 20km, 서귀포시청까지 약 40km거리에 있으며 제주공항까지는 18km거리에 있어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제주시의 기후는 한반도보다는 해양성기후를 나타내지만 일본보다는 대륙성기후를 보여 전체적으로 온대해양성을 나타낸다. 애월읍은 북부가 바다로 열려 있어 동계계절풍이 탁월해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바람이 많은 지역이다. 기온과 강수량은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라산의 남사면이 북사면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기후는 겨울이 따뜻한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제주시의 2010년~2014년 사이의 연평균 기온은 15.88℃이며, 강수량은 1,495.14mm, 평균습도 68.20%, 평

균풍속 3.34m/s로 나타난다.

애월읍의 농가는 전체가구(11,868호)의 41.2%인 4,893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애월읍 전체 면적 20,215ha의 27.4%인 5,539ha가 농경지이다. 이 농경지는 채소류가 2,002ha, 감귤이 1,543.1ha, 식량작물이 677ha, 특용작물이 393ha를 이루고 있다. 채소류가 총생산량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귤류가 23.7%를, 채소류 작물 중 양배추가 27.5%를, 브로콜리가 22.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애월읍 내에는 목장 13개소, 초지 1,925ha, 축산단지 3개소가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으로 가축 277,081두(수)로 집계되었다. 애월읍의 가축사육 농가는 381호로 파악되며 제주마, 닭, 돼지, 한우 등을 사육한다. 수산산업도 발달하여 연안항 1개소, 마을어장 10개소, 어선 79척, 잠수부 33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애월읍의 어가수는 142호이고, 7개 어촌계 582명이 종사하고 있다. 양식장 15개소도 포함한다.<sup>1)</sup>

현재까지는 1차산업 비중이 높지만, 애월읍 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6개, 도지정 문화재 28개가 있고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제주마축제, 발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만남행사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애월읍에는 각종 오름과 렛츠런파크제주(제주경마공원), 광지해수욕장 등의 관광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애월해안도로와 고내봉, 올레16코스가 분포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 Ⅲ.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

#### 1. 평택 LNG 인수기지 주민지원 사례

##### 1) 주민갈등 및 요구사항

인수기지 신설 당시(1986년) 사회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주민의식이 미흡한 상태라 민원은 많지 않았지만, 현재 지원 요구 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평택에서는 지자체간(타 인수기지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역통계 (2015).

지자체) 갈등은 있어도 지역 내에서의 갈등은 미미하다.

## 2)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 방안

2014년 한국가스공사 주관으로 발전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중이다. 2013년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발전소 반경 2km에 걸쳐있는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 평택시와 관련 지자체, 가스공사가 협의중에 있다.

가스공사는 송출량  $m^3$ 당 0.1원씩(전전년도 기준) 지원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는  $m^3$ 당 0.2원씩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계획으로는 연17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12억은 평택, 5억은 나머지 지자체(화성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외에 가스공사는 2002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확보한 토지 중 일부를 평택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LNG 저장 및 공급시설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지만 관련 법제가 미비하여 구체적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현재는 서부발전에 임대해 주었다.

가스공사의 주민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행사 등과 같은 단기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경 주민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토록 도시지역의 LNG 공급지역과 미공급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워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구하였다. 송출량  $m^3$ 당 2.09원을 적립하여 ‘삼천리 도시가스’(도시가스 판매·공급업체)로 하여금 LNG 공급 취약지에 시설 설치(도시가스 배관 사업)를 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한 것이다. 또 LNG 공급이 어려운 오지마을의 경우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등 LNG와 LPG의 가격 차이에 따른 지역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평택은 인근에 삼성단지 110만평, LG 단지 86만평이 접해 있고, 서울의 남부지역과 근접하여 송출량이 상당히 많은 기지이므로 적립금액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에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 2. 삼척 LNG 인수기지 주민지원 사례

### 1) 주민갈등 및 요구사항

2011년 12월 마을 주민 위원회에서 건의한 LNG 생산기지 건설 시 주민 건의 사항을 토대로 주민 갈등과 요구사항을 정리해 진행하였다. 주민 건의 당시인 2011년 12월 5일 에너지지원과를 원덕읍내로 즉시 파견하여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수산업, 환경개선, 지역개발 및 주민지원, 문화관광 및 기타 등 체계적으로 나누어 에너지지원과와 주민위원회의 분과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가스공사와 남부발전, 주민, 행정(삼척시) 3자 회동을 1년 이상 진행하였고 23개 항목을 일괄합의 하였다. 주민 건의 사항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차례차례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표 Ⅲ- 1〉 삼척시 LNG 인수기지 건설관련 주민 건의(요구)사항

번호	건의사항
1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하라
2	LNG 부지조성이 자연재해에 대비된 설계인지 공개하라
3	주변 해안마을 침수에 대한 대책을 공개하라
4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안전 감시요원을 배치하라
5	반입된 토사를 방사능검사 실시하고 공개하라
6	주변지역 마을 단위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하라
7	대형차 및 공영주차장 문제, 대형차 이동로 개선하라
8	부설시공의 원인인 석회석광산 폐쇄희석 반입을 중단하라
9	무료 세차장 시설을 구비하라
10	LNG운반선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항계 밖 수로에 대한 어업피해를 보상하라
11	지정항로 밖 안전중업을 위한 등부표 설치하라
12	보상지역 이외 인근지역에 용역조사 후 보상하라
13	원덕수협이 대체어장 및 소득개발 시 지원하라
14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지원 혜택을 밝혀라
15	LNG기지 건설에 관내업체 참여 의무화하라
16	직원 채용 시 주민을 50% 의무 채용하라
17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피해보상금 2,000억 지급하라
18	원덕지역 가스공급을 설계에 반영하라
19	주변지역에 무상 가스공급을 하고, 자연부락은 보조금으로 대체하라
20	LNG기지 건설로 발생하는 배출폐기물 및 고철처리권을 대책위에 이양하라



21	상수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라
22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및 어음발행을 근절하라
23	장비는 지역업체가 주체가 되고 균형적인 분배를 하라
24	자재, 물품, 요식업, 농수축산물은 지역업체를 이용하라
25	LNG기지의 순이익의 10%를 지역환원하라
26	LNG기지 추가 증설 시 읍민과 협의 후 시행하라
27	사원용 사택을 조기에 착공하라
28	원덕읍내 초·중·고 학교의 기자재를 지원하라
29	향토장학회 기금 50억원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라
30	노인전문 무료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이 포함된 실버타운을 건립하라
31	종합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라
32	문화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라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 2)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 방안

삼척시는 5~6 군데의 후보지역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유치하였기 때문에 삼척시가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LNG 가스 특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집단을 위한 대책 위주로 고려중이다. 가스공사의 지원금으로 LNG 소외지역에 대한 연료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확정 상태이다.

가스공사는 m<sup>3</sup>당 LNG 송출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과 평택의 경우에는 송출량이 많기 때문에 송출량 기준이 적합하지만, 삼척은 사실상 비축기지로서 송출량보다는 비축량이 월등하다. 따라서 삼척시는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가스공사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논쟁중이다. 삼척시는 삼척의 인수기지는 비축기지로서의 대량의 가스를 보유한 시설 자체의 위험부담에 따른 지원금 산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가스공사의 특별지원금 290억은 원덕읍내 150억(가스관로사업), 외곽지역에 140억(소득지원사업)을 예산 배정하였다. 현재 송출량 기준으로 나오는 가스공사의 지원금은 가스관로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원덕읍내의 경우 가스관로 사업이 완료되면 LNG 공급이 바로 가능하다. 매년 나오는 지원금은 앞서 말한 연료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NG 소외지역에 연료 대체방안으로서 향후 상정될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 될 예정이다.<sup>2)</sup> 지원지역 범위가 2km 밖의 지역이라도 삼척시 향토장학금 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구상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지원금(5km 이내 지역)은 마을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있다. 펜션 신축을 삼척시에서 직접 하여 어촌계 등에 소유권 및 운영권을 제공하고 어촌계 외 별도의 운영위원회 결성을 삼척시에서 제의하였다. 발전소 지원금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경우 어촌계 위주였기 때문에 비어촌계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LNG 인수기지 쪽의 지원금으로 비어촌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되었다. 또한 발전소 내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센터(약190억원)를 주민에게 개발하였으며, 장학금으로 10억을 책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 가스비 할인 등 지원책의 경우 매년 지원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특별지원금 120억원을 5년간 지원하여 총 600억원은 가스관로사업에 투입예정이다. 가스관로 사업은 세대당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10개리, 약 1,200세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가스관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표 Ⅲ- 2〉 삼척시 수익사업 1

	시설명	작진어촌계 소득증대사업
	규모	지상3층(18세대)
	사업비	총사업비 : 16.5억 지원:13억, 자부담:3.5억(토지)
	개관연도	2013년 12월
	시설종류	펜션
	운영주체	작진어촌계 운영위원회
	운영형태	현재 남부발전 공사 근로자 월세 임대
	특기사항	개관 이후 평균 (세대 당) 160만원 소득 발생 (추정)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2) 2015년 3월 5일 “삼척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정되었다.

〈표 Ⅲ- 3〉 삼척시 수익사업 2

	시설명	고포마을회관 및 숙박시설
	규모	지상3층
	사업비	총사업비 : 5.8억 지원:5.8억, 자부담:토지
	개관연도	2014년(예정)
	시설종류	1층 : 마을회관, 경로당 2, 3층 : 펜션(원룸형, 6세대)
	운영주체	고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형태	가스공사 근로자의 숙박지(예정) 또는 성수기 시 관광펜션
	특기사항	기존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 3. 인천 LNG 인수기지 주민지원 사례

#### 1) 주민갈등 및 요구사항

인천 LNG인수기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시설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주장이 많아지고 보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요구가 많다. 안전을 중시하여 시설 반대에 대한 의견도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지원금을 송출량 m<sup>3</sup>당 1원까지 요구하기도 하였다. 송도 인수기지가 처음 설치될 때는 송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약 5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현재 송도국제도시 건설에 따른 매립으로 인수기지와 매우 근접하게 되어 주민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인터넷과 동사무소 공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위원회를 통한 수렴 병행을 계획하고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조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실현가능한 것부터 반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 중인 단계로서 아직까지 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구상중에 있다. 국비지원과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투자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LED사업 지원, 놀이터 낙후 시설 교체, 에너지관련 홍보과 건립 등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2)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 방안

인천시는 가스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120억원을 지원받았다. 송도(인천 또는 연수구)는 가스공사에서 선학동의 아이스링크 공사비 130억원을 지원받았고,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여 배구경기장으로 조성·활용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송도의 가스공사 내의 수영장, 야구시설, 골프관련 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향후 지원시설의 경우 지역 또는 주민들과의 협약 시 년 1회 회계감사를 주무과에서 시행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각종 비리에 대비하는 면밀함도 보이고 있다.

## 4. 주요 사례지역 특징 및 시사점

### 1) 주요 사례지 특징

〈표 III-4〉 인수기지의 개요

구 분	평택LNG	삼척LNG	인천LNG
저장탱크	296만ki(21기)	180만ki(9기)	288만ki(20기)
운전개시연도	1986년도	2014년도	1996년도
거주지와의 최근접거리	2.8 km	0.5km	3.0 km
건설단계 중 법적보상 현황 <sup>3)</sup>	29억원	513억원	387억원
건설단계 중 법적보상 외 지원 현황 <sup>4)</sup>	57억원	4억원	216억원
운영단계 중 지원 현황 <sup>5)</sup>	160억원	1.76억원	200억

3) 한국가스공사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인수기지 건설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지원한 금액임. 여기에는 육상보상비(사유지보상비, 국유지보상비, 실농보상비, 분묘이장비 등)와 어업보상비(어업권소멸보상비, 어선/어구 보상비 등)가 포함되었음.

4) 한국가스공사가 인수기지 건설기간 동안 법적보상 외에 인천에서 가스과학관, 평택과 통영에는 홍보관을 건설하는데 쓰인 비용과, 이밖에 이주대책 및 지원을 위한 법률보상 이외의 특별지원비를 포함함.

5) 한국가스공사가 인수기지 건설 후부터 2012년까지 운영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지원한 금액임. 여기에는 기부금(복지시설, 문화행사,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과 주변지역지원금(주변지역에 대한 부지제공, 체육시설 건립지원, 공급배관 설치

① 평택 LNG 기지의 특징

평택은 인수기지가 80년대에 설치되었다. 이 당시에는 주민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원책 또한 전무한 상태였다. 인수기지 관련 지원 지자체가 평택시와 화성시 2군데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비가 분산되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적은 편이다.

평택 LNG 기지의 LNG는 평택기지에서 수도권으로 다량 송출된다. 송출량  $m^3$ 당 산정된 지원금의 규모가 연간 17억원 상당의 규모이다.

② 삼척 LNG 기지의 특징

인수기지 입지 상 항만시설 신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원이 가장 크다. 삼척 LNG 기지의 송출량은 적어서 지원금 또한 적은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지역 내 대규모 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상당 금액의 발전소 지원금을 보조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의 인수기지 관련 지원금은 지자체(원덕읍) 내의 가스관로 시설 설치에 쓰도록 계획하여 실행중에 있다. 사실상 비축기지로 쓰이고 있으므로 송출량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현 체제에 반대하고, 시설용량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③ 인천 LNG 기지의 특징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서는 소극적이다. 인천 LNG 기지내 LNG는 인천기지에서 수도권으로 다량 송출되고 있으며 송출량  $m^3$ 당 산정된 지원금의 규모가 큰 편이다. 삼척시가 주장하는 시설용량에 따른 지원금 산정에 대항하여, 인구밀도를 고려한 산정을 주장하고 있다.

## 2) 주요 시사점

### ① 지원금 측면

국내 6개 지자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크게 송출량, 시설용량, 인구밀도를 근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는 지역특성 상 3가지 부문 모두 소규모이므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지원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② 지원 사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시설)

지원 사업은 크게 가스관로시설 지원, 에너지 복지의 측면, 지역 소득 증대사업으로 나뉜다. 가스관로 시설 지원은 인수기지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 에너지 복지의 측면은 인수기지 인근지역 중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이다. 지역 소득증대 사업은 재원 마련이 가능할 시 인근지역 및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예를 들면, 삼척의 경우 발전소 지원금으로 신축한 팬션을 마을에서 운영하여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 ③ 기타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지원사업 구성 및 범위에 대한 총체적 검토 기구 설립을 위한 TF Team(환경, 건설, 행정, 어촌계 등의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 산업부 및 관련 지자체의 지원사업 종류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한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여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주민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갈 행정,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필요하다.

## IV. 주민지원관련 법 검토<sup>6)</sup>

### 1.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황

LNG 지원법률안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 안정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LNG 생산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국 가스공사와 LNG 이용자들로부터 확보한다. 또한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5~10km에 들어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정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존재한 상태로서 LNG 관련 지원법률에 대해 최초로 발의된 것은 2005년 10월로서 당시 발의된 의안은 계속 보류되다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본 회에서 통과가 무산되고 다시 폐기되었다.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영의안<sup>7)</sup>)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지역’으로 정하고, 지정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한국가스공사 등의 출연금과 천연가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가스사용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공공시설, 육영·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건립비 등을 지원받도록 하였다.

2012년 7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6) 김현철 외 13인(2014) (pp.42~50) 참고하여 집필하였음.

7) 발의자 : 이재영 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2.06.14. / 회부연월일 : 2012.07.09

(강창일의원안<sup>8)</sup>)’이 발의되었는데 이 또한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주변 지역’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다만 차이점으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재원마련 방법 등에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재원마련 부분에서 인수기지 소유자 및 운영자를 포함한 지원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IV-1〉 두 법률안 비교

		이재영안*	강창일안**
공통점		· 주변지역의 정의를 인수기지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정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모델로 삼은 것임	
차이점	재원 조달 방안	· 가스사용자의 가스사용부담금 · 한국가스공사, 인수기지 소유자, 발전사업자의 출연(금입의) 등으로 조성되는 국가 기금인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	·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종류 등을 정함 · 비용은 한국가스공사 등 인수기지 소유·운영자가 부담
	지원 사업 종류	① 지역개발기초지원사업, ② 도시가스요금보조사업, ③ 주민복지지원사업, ④ 기업유치지원사업, ⑤ 그 밖의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 ·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① 공공시설지원사업, ② 육영·복지지원사업, ③ 문화예술지원사업, ④ 그 밖에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함

\*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법률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이 법률을 근거로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만들었는데, 현재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채환 상태에서 명문 규정을 세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

8) 발의자 : 강창일 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2.07.09. / 회부연월일 : 2012.07.10



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6월 16일에 제정되어 2015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동법 제1조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다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대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 댐발전소와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전술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영의원안)’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의원안)’의 내용은 이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2005년 12월 30일 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소득중대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 2〉 기본지원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사업종류	세부내용
소득중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향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제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3.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

<IV-3>은 한국가스공사에서 2008년 9월 24일 「천연가스시설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을 제정하고, 2014년 8월 26일 개정된 내부 규정 자료이다<sup>9)</sup>. 이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된 지원사업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하거나 사회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며, 천연가스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건설사업 착수 시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의 기간 내에 시행된다.

또한 천연가스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은 천연가스시설 운영기간 동안 매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동규정 제8조에서 생산기지가 운영 중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지원사업과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실시하는 특별 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9) 참고로 한국가스공사 이외로 광양 LNG 인수기지는 (주)포스코가 소유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을 따르며 (주)포스코는 LNG를 수입하여 비축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임. 따라서 사업 이득 목적인 (주)포스코를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중점으로 기재함.

〈표 IV-3〉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 일부

사업종류	세부내용	발전소법 비교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같음
공공· 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같음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같음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같음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및 환경오염 진단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에너지 지원 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 너지, 기타에너지 설치 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사회봉사활동	임직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지역 사회취약 계층 지원, 환경 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	
그 밖의 지원사업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지역발전기금 및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등	같음

자료 :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규정” 참고

기본지원사업은 생산기지에서부터 반지름 2km 이내의 섬 및 육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해당하며, 종류는 위의 표와 같고, 앞에서 제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다만 환경개선사업, 에너지 지원 사업, 사회봉사활동은 가스공사 규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된다.

이처럼 지원사업과 함께 동규정 제8조의 2에서 지원금의 규모도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전전년도 천연가스송출량(Nm<sup>3</sup>) 및 전년도 저장탱크설비용량(kl)을 반영한 금액을 기본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기지별 배분

금액 산출서식에 따라 다르다.

$$\text{산출서식} = \text{전전년도 기지별 천연가스송출량(Nm)} \times (\text{전전도말 기지별 저장탱크설비용량(k)} \times 1\text{억원/백만k})$$

※ 1톤당 1,258Nm<sup>3</sup>을 환산적용하며, 산정금액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삭함

생산지지 건설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공사계획 승인 또는 지자체 신고를 말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1% 이내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원금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표 IV-4〉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 규정에 의거한 지원

구 분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지원시기	건설단계	운영단계
지원비 규모	건설 총사업비 1% 이내	전전년도 천연가스 송출량(Nm <sup>3</sup> )당 0.105원 + 전년도 저장탱크용량 백만k당 1억원

자료 :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규정” 참고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LNG 인수기지인 평택, 삼척, 송도(연수구)는 건설단계에서 건설 총사업비의 1% 이내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전전년도 천연가스 송출량(Nm<sup>3</sup>)당 0.105원 + 전년도 저장탱크용량 백만k당 1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마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원한다.

〈표 IV-5〉 건설단계 지원 실적 - 법적보상('83~'11)

(단위: 억원)

기지명	육상보상비 <sup>10)</sup>	어업보상비 <sup>11)</sup>	합 계
평택기지	-	29	29
인천기지	-	387	387
통영기지	288	458	746
삼척기지	434	79	513
총 계	722	953	1,675

자료 : 지식경제위원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표 IV-6〉 건설단계 지원 실적 - 법적보상 외 지원('83~'11)

(단위: 억원)

유 형 별	평택	인천	통영	삼척	합계
가스과학관(인천), 홍보관(평택, 통영) 건설					
이주대책 및 지원 (법률보상 이외 특별지원)	-		387		0

자료 : 지식경제위원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표 IV- 7〉 운영단계 지원 실적( ~ '12)

(단위: 백만원)

구분		'05년 이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평택	기부금	83	17	144	74	109	66	81	69	643
	주변지역 지원 <sup>12)</sup>	15,400	-	-	-	-	-	-	-	15,400
	소계	15,483	17	144	74	109	66	81	69	16,043
인천	기부금	47	14	53	50	37	53	72	74	400
	주변지역 지원	10,600	-	-	-	5,000	4,000	-	-	19,600
	소계	10,647	14	53	50	5,037	4,053	72	74	20,000
통영	기부금	151	58	93	94	128	162	195	182	1,063
	주변지역 지원	9,000	-	-	-	-	3,270	77	2,400	14,747
	소계	9,151	58	93	94	128	3,432	272	2,582	15,810
삼척	기부금 <sup>13)</sup>	-	-	-	3	5	25	63	80	176
합계		35,281	89	290	221	5,279	7,576	488	2,805	52,029

11) 어업보상비 : 어업권소멸보상비, 어선/어구 보상비 등.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 규정의 개정 전에는 기본적인 지원사업의 종류나 세부내용, 재원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없었고,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과 재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종전에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소 모델로 삼았지만, LNG 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이 없는 현시점에서 명문 규정을 세운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4. 타분야 지원사업의 근거법률과 유사제도

##### 1)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

1989년 6월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후,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이익을 받는 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IV- 8〉 우리나라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

대상지역	근거법률
담주변지역	- 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상수원관리구역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 자연공원법

12) 주변지역 지원 : 주변지역(지자체 등)에 대한 부지제공, 체육시설 건립지원, 공급배관 설치 등.

13) 기부금 : 복지시설, 문화행사,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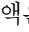
자연마을지구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행정중심도시 주변지역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 2) 타분야 유사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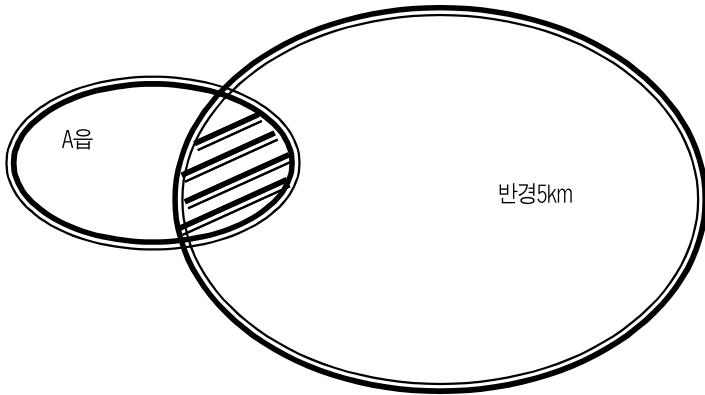
두 가지 유형으로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 발전 유형과 수력(댐), 조력발전소유형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눠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9〉 유사 주변지역 지원제도

유형	지원기준 및 지원금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지원</li> <li>○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에서 지원</li> <li>※ 단,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기본지원금의 50%이내 지원가능</li> </ul>
수력(댐), 조력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수위선 혹은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li> <li>○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에서 지원</li> </ul>

주변지역 지원범위는 2km~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정하여, 발전소 주변에 위치한 A읍의 경우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 그림의  부분이지만 지원금 사용은 A읍 전체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원자력발전소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기본지원금의 50%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그림 IV-1〉 주변지역 지원범위



제주는 애월읍의 면적이 20,215ha인 것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을 정할 때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5Km로 정하는 방안과 주변지역 반경을 좁히더라도 애월읍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해야 한다.

## V.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LNG는 LPG와 비교하면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화재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이다. 따라서 도시가스의 주연료로 제주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애월읍 LNG 인수기지 설립 중에 있다. 인수기지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수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 부분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인수기지가 입지하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대한 노출,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 등을 최소한으로 하고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주민지원 대책이 속속 제도화되면서 이들 시설을 수용하고 얻게 되는 큰 보상과 견주어 느끼는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불가결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상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무한 상태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수 존재하지만 LNG 인수기지 지원 조례는 없는 실정이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정한 「천연가스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 규정만이 명문화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속히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고 이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LNG 인수기지 지원법률은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이용자에게서 확보한 예산으로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원방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가스공사의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지원금의 산출방식은 제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송출량, 시설용량, 인구밀도 모두 낮은 제주 인수기지는 타지역 인수기지와 지원금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제주는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실행하기에도 모자란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최소지원금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또다른 방안으로, 가스공사는 현재 기지 지자체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균등하게 분배하는 형태의 지원방식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있는 LNG 인수기지 총 5개 기지(제주 포함), 7개 지자체에 가스판매수입금 중 일부를 지원금으로 책정하여 균등하게 나눠 배분 하는 것도 검토 할만하다.

제주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강창일 외 9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대표발의)』, 2009.
- 김현철 외 13인,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 『제주발전연구원 보고서』, 2014.
- 김현철 외 2인,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 후속과제』, 『제주발전연구원 현안과제』, 2016.
- 이재영 외 9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2012.
- 강승진, 임소진, 「LNG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인수기지·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보고서』, 2006.
- 김광석,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0.
- 김영길, 「청정 LNG(천연가스) 도전역 조기보급 및 LNG발전소의 건설」, 『제주발전포럼 통권 제43호』, 2012 가을.
- 지식경제위원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이재영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2.
- 제주발전연구원, 「LNG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6.
- 김현철 외 9인,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 기반구축사업」, 『제주발전연구원』, 2014.12.
-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규정」, 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호, 2013.3.23., 타법개정).
- 한국에너지재단(<http://www.energylove.or.kr>).

Abstract

## Institutional Measure on the Support to the Local Resident around the Jeju LNG Receiving Terminal

Kim, Hyun-Cheol\*·Kang, Young-Eun\*\*

Jeju has been using LPG as the main heating fuel contrary to the LNG of main land Korea. There are a number of opinions that Jeju also can use LNG instead of LPG, which is known as relatively high-cost and non eco-friendly heating fuel. Through the various discussion on constructing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Harb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nally takes the permission of constructing the facilit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w the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is under the construc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among the many cases, has been known as the supporting plan over the several years for the Aewol town around the facility. The support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make it a rule to give fair aid to local residents around the LNG Terminals of existing regions such as Pyungtaik, Samchuk etc. based on the the same criteria. The would-be compensation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ewol town is not expected to be satisfactory, judged from the population size and other conditions of Aewol.

---

\* Senior Researcher of Jeju Development Institute, Main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A Master of Laws, Corresponding Author.

Accordingly, this is right time tha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upplementing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Aewol residents in addition to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Faced upon the issue above, this paper analyzes current status of various conditions of Aewol area, examples of aids to the regions around the existing LNG facilities, examining the related law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e province ordinance on the support to local resident of Aewol town.

key word : LNG Receiving Terminal, LPG, Province ordinance

교신 : 강영은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124  
오라만진리치빌 102-501  
(E-Mail: iamkye@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08. 29.

심사완료일 2016. 10. 04.

게재확정일 2016. 10. 07.